

인천광역시의회 규칙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가. 제7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제도의 일몰로 교육의원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 나.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과 그동안 회의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일과 의사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3조)
- 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범위에 대안을 포함하였고, 수정동의 발의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제24조, 제26조)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과 관련된 교육위원회 자체의결 안건을 교육위원장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제32조)
- 라. 시정질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시정질문 기간 중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당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제73조의2, 제73조의3)

마.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의안발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함(제88조의4)

바. 개정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5. 2.)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이 성 렵

2014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25호

인 천 광 역 시 의 회 회 의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의석배정)”을 “(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④ 사무처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때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대안을 포함한다)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정동의)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동의가 발의되는 경우 의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정동의 발의에 중복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자 없이 바로 의제가 된다.

④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토론종결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한다.

제3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질문일별 질문순서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별 질문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위원회 순서에 따르며, 시정질문일마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대별 최초의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73조의3제1항 중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한하여 늦어도 답변시간”을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 그리고 시정질문기간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늦어도 답변시작”으로 한다.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안발의, 시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